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한시정원 1명(5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「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1. 8. ~ 1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2021년 2월 28일”을 “2023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4]

국가보훈처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24조 관련)

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2월 28일)

총계 1

일반직 계 1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

또는 기록연구관 1

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2년 2월 28일)

총계 1

일반직 계 1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

또는 기록연구관 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한시정원)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1년 2월 28일</u> 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처에 두며, 별표 14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)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.	제24조(한시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2월 28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